#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경기력향상위원회 규정

2016년 2월 11일 제정

제1조(목적) ①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규약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경기력향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종합적인 체육진흥 방안과 경기력향상 기본계획 수립
2. 전국체전 참가 및 선수 강화훈련 계획 수립
3. 선수강화 훈련지도, 감독, 평가에 관한 사항
4. 경기 지도자의 양성 및 자질 향상에 관한 사항
5. 우수선수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
6. 체육 장학금 수혜자 심사에 관한 사항
7. 기타 경기력 향상에 관한 사항

제3조(구성)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당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.

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본회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
제4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5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,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④ 위원장이 유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⑤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 중 긴급을 요할 경우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.

제6조(위원회 운영) 본 위원회는 제2조에 규정된 기능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(비상설)를 둘 수 있다.

제7조(사무처리) 본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본회 사무처 해당부서 에서 담당한다.

제8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운영내규)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## 부 칙 <2016. 2. 11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